

문서번호	도로시설과-21598
결재일자	2015.11.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도로계획담당	도로시설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	부구청장	
이재균	김학동	송기민	이승복	11/03 김병환	
협 조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담당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최태규 홍순명 </div> </div>				

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검토보고

[아리랑길 도로확장공사]

2015. 10.

안전건설교통국
도로시설과

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검토보고

(아리랑길 도로확장공사)

아리랑길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해당 필지에 대해 현황에 맞게 도로용지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「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」 검토 사항임

I 사업개요

- 공사명 : 아리랑길 도로확장공사
- 위치 : 정릉동 139 ~ 동선동4가 1
- 규모 : B = 15 → 25~30m, L=1,260m
- 사업기간 : 1999. 9. 13. ~ 2005. 6. 22.

II 현 황

■ 민원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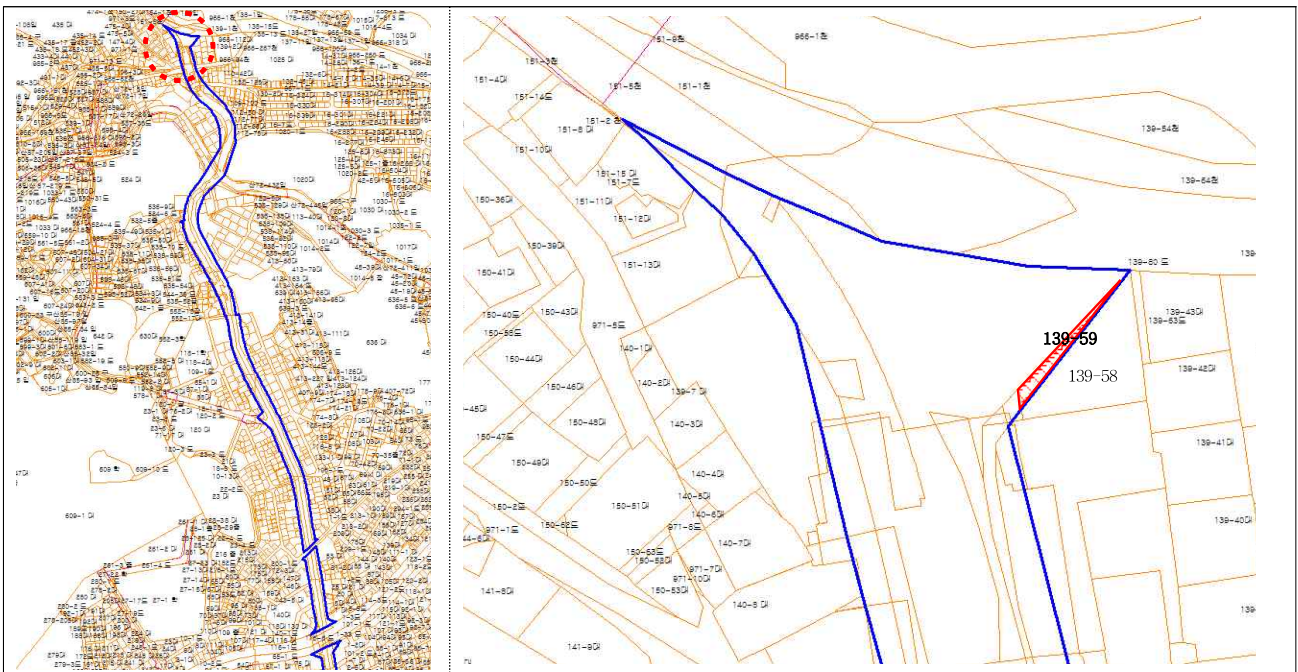
- 민원인 : 강경희(종로구 평창동)
- 위치 : 정릉동 139-59대지, 1필지
- 내용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나 도로저촉 용지로 남아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

■ 토지현황

위치	지목	면적	도시계획사항	이용현황	비고
정릉동 139-59	대	22㎡	준주거지역, 일반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, 도로	상가건물	공시지가 5,350,000원

- 해당필지는 정릉로와 아리랑로 교차지점 가각부(모퉁이)에 위치하며 상가건물로 사용중임
- 해당필지 앞 보도 여유폭이 넓고 차로 회전반경(R=20m) 또한 여유가 있음

○ 아리랑길 확장공사,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도면



III 아리랑길 도로확장공사 추진 현황

- 1971. 4. 7.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
- 1995.12. 1.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
- 1996. 3.28.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(최초)
- 2004. 5.31.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(최종)
- 2006. 2. 9.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공사완료 공고

IV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검토

■ 관련부서 협의(2015. 2. 2. ~ 2.13.)

협의부서	협의사항	검토의견	비 고
서울시 도시철도 사업부	- 도로선형 변경시 경전철사업 저촉여부	저촉사항 없음	도시철도사업부 -1429(2015.2.23)
서울시 도로계획과, 시설계획과	- 집행가능성이 없는 해당필지의 도시계획시설(도로) 존치 여부 - 매수청구시 보상 처리 여부	의견 없음	

■ 검토의견

- 해당 필지는 아리랑길 도로확장공사 시행시 도로부지 편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도로계획선 변경에 대한 조치 없이 공사완료되어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저촉된 상태로 존치중임
- 해당 필지 앞 보도는 4~5m폭원으로 형성되어 도로폭 추가확장 효과가 미미하며, 「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규칙」에 따른 차량최소회전 반경 기준을 충족하므로 현 계획선 존치의 필요성이 적음
- 현장 여건에 맞게 도로계획선을 변경하여 실효성 없는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획지선을 함께 변경하여 해당 필지는 도로구역에서 제척함이 타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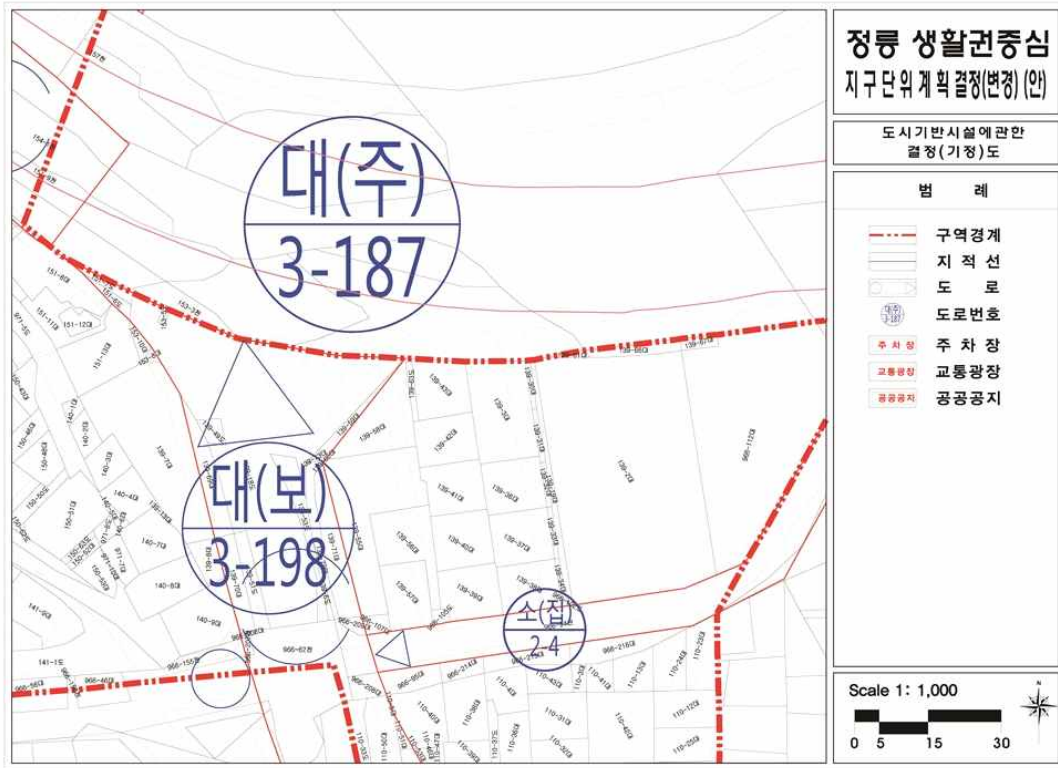
V 조치계획

- 해당필지 지적선에 맞게 도로계획선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획지선 병행 변경 추진
-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이행 - 도시계획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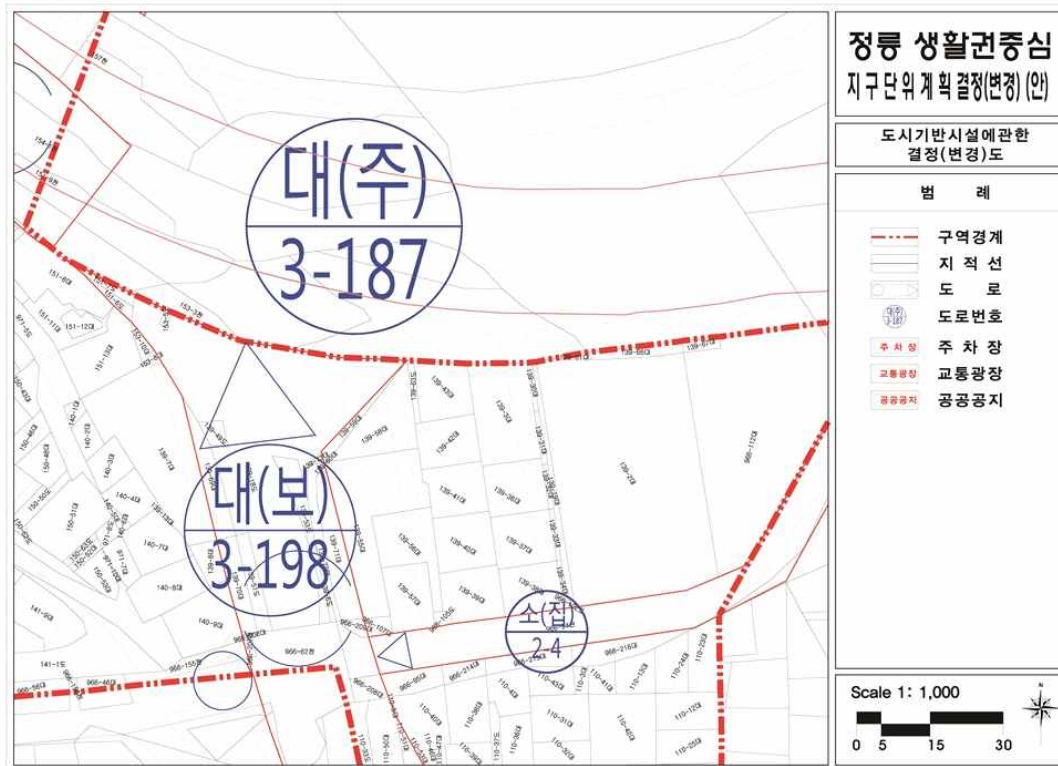
- 붙임 1)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(안)
2) 계획설명서 및 위치도 1부.
3)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(안) 1부(별첨)

붙임 1)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(안)

■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로 결정(기정)도



■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로 결정(변경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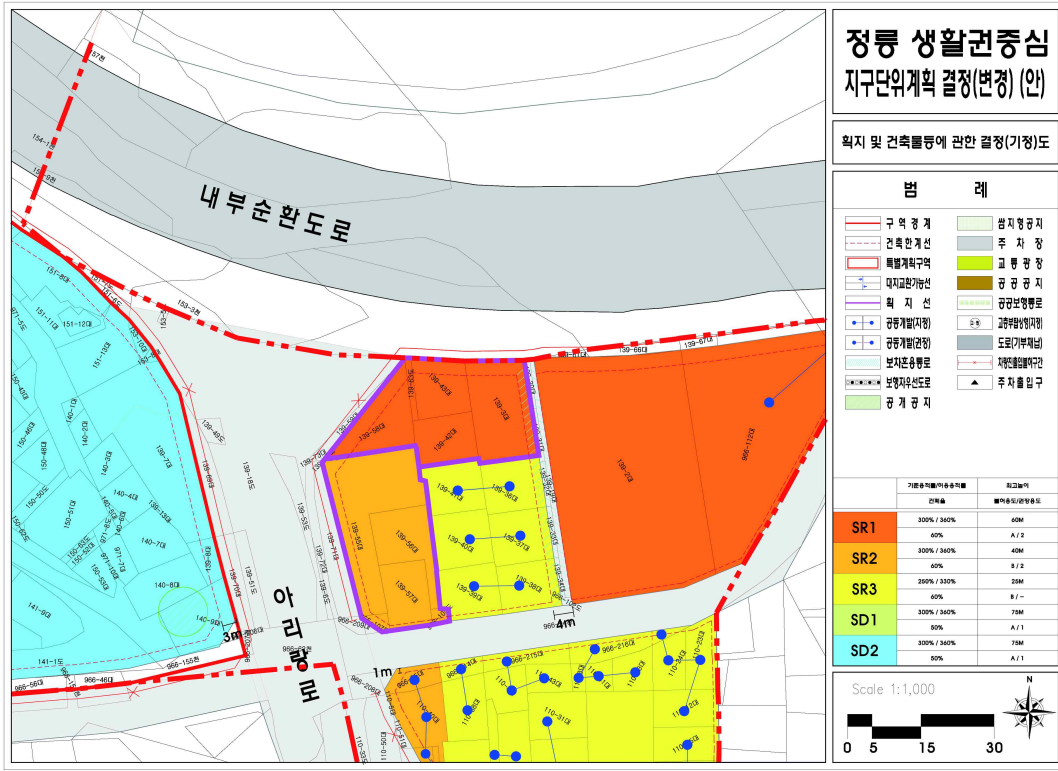
○ 도로(변경) 결정조서(안)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3	198	25~30 (25)	간선 도로	1,510	동선동1가 46-1	정릉동	일반 도로	-	서고198 71.4.7	아리 랑로
변경	대로	3	198	25~30 (25)	간선 도로	1,510	동선동1가 46-1	정릉동	일반 도로	-		종점부 가각 선형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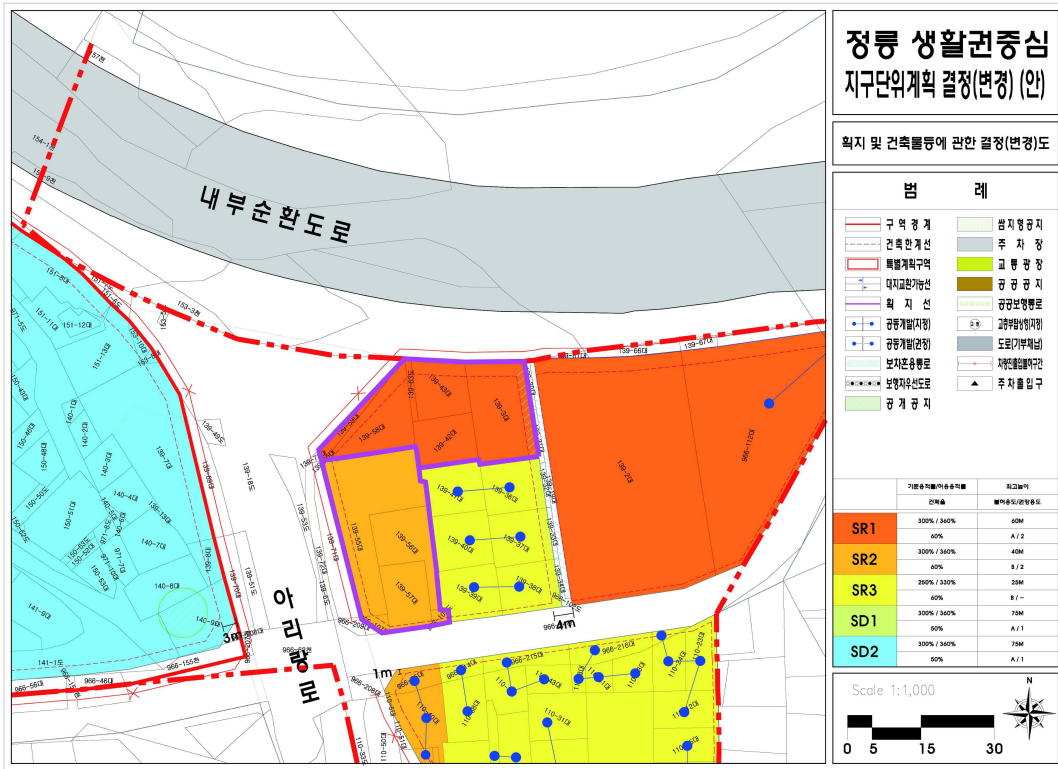
○ 도로(변경) 결정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대로3-198호	대로3-198호	일부구간 선형변경으로 인한 조정	· 종점부 가각 선형변경에 따른 편입 면적 제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

○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획지번호	면적(㎡)	위 치
기정	15	697	정릉동 139-3, 139-42, 139-43, 139-58, 139-63
변경	15	719	정릉동 139-3, 139-42, 139-43, 139-58, 139-59, 139-63

○ 획지계획(변경) 사유서

대상지번	변경내용	변경사유
정릉동 139-59	가각부 선형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71년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후 1995년 12월 1일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이 되었으며 2004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으로 2006년 아리랑길 확장공사를 완료한 후 139-59번지(22㎡) 종점부 가각부분이 도로부지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존치되고 있음 - 현재 도로가각부의 보도는 4~5m 폭원으로 형성 이용되는 상황이며 차량이 이용하는 가각부의 선형 구성이 R=20이상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(2013.10)에 만족되며 추가 확장시 효과가 미미하므로 도로계획선을 변경하여 효과가 없는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획지 및 건축한계선을 변경 하고자 함